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부대사업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 연장 및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식 확대 등〉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742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                                               | 1  |
| III. 주요내용 .....                                              | 2  |
| IV. 검토의견 .....                                               | 3  |
| 1. 개정안의 제출 배경 .....                                          | 3  |
| 2. 부대사업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 연장(안 제21조의2제2<br>항 신설) .....       | 6  |
| 3.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식 및 범위 확대                                   |    |
| 가.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 한도 상<br>향(안 제41조의5제1항) ..... | 17 |
| 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범위 확대(안 제43조제1항) ....                     | 23 |

|                                                              |    |
|--------------------------------------------------------------|----|
| 다.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허용(안 제44조제1항) .....                     | 28 |
| 4.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에 따른 통보 의무 근거 마련<br>(안 제41조의6제1항) ..... | 35 |

##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박성훈의원 등 12인

나. 제 출 일 : 2024. 10. 17.

다. 회 부 일 : 2024. 10. 18.

## II. 제안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부대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그 운용방식 및 범위 등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투융자집합기구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설정·설립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아닌 ‘보고’를 통해 투융자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설정·설립에 관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이 아닌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 설정·설립을 통보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Ⅲ. 주요내용

가. 부대사업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 연장(안 제21조의2 제2항 신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부대사업 관련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함.

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식 및 범위 확대(안 제41조의5제1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완화, 자산운용 범위 확대, 존속기간 설정의무 배제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에 따른 통보 의무 근거 마련(안 제41조의6제1항)

설정·설립 이후 등록이 아닌 보고를 하는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고서류 등을 기획재정부에 송부하도록 하여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구에 대한 통보 의무를 보완하려는 것임.

## IV. 검토의견

### 1. 개정안의 제출 배경

민간투자사업이란 기존에 정부부문의 범주에 속했던 도로·항만·철도·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SOC)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담당하여 추진하는 것을 의미함.

정부는 1994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정 이후 30년간 도로·철도·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146조 원 규모의 853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하였음. 그러나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및 금융비용 상승 등 사업 여건은 악화되는 반면,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는 최근 민간투자사업이 당면한 현안 해결 및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2024년 10월 2일에 발표하였음.

정부는 ‘4대 분야 18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러한 개선을 통하여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참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24.10.2.) 중점 추진과제 ]

| 분야              | 과제                                  | 개선방안                                                                                                               |
|-----------------|-------------------------------------|--------------------------------------------------------------------------------------------------------------------|
| 사업<br>발굴·<br>협상 | 1.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 개량증설 사업 대상 확대<br>· 관리운영기간 만료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br>·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민자사업 적극 활용<br>·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연장                         |
|                 | 2.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 활성화               | · 생활SOC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보증 신설<br>· 통합 생활SOC 사업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 인하<br>·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유도<br>· 8대 권역별 지역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            |
|                 | 3.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                     | · 결합형 민자사업 주무관청 지정 제도 도입<br>· 예산성과금 지급 한도 확대                                                                       |
|                 | 4.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활성화                  | ·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패스트트랙 도입<br>· 새로운 대상시설 우대 보증 신설                                                                      |
|                 | 5. BTO 정부고시사업 확대                    | · 부문별 민자사업 5개년 계획 마련<br>·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쟁적 협의 우선 검토                                                                   |
|                 | 6.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 사업 도입               | ·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절차 마련                                                                                             |
|                 | 7. 재정-민자사업 연계 강화                    | · 재정사업의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 개편<br>·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확대                                                                        |
|                 | 8. 탄력적 사용료 및 소통 확대                  | · 대심도 도로 등 탄력적 사용료 책정<br>· 적격성조사 시 최초제안자 소통 확대<br>· 사업제안 시 제안비용 최소화                                                |
| 금융<br>조달        | 9. 투자자금 확대 및 금융 여건 개선               | ·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도입<br>· ‘ <u>만기 없는</u> ’ <u>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허용</u><br>· 은행의 인프라 투자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br>· 공공기관 출자 활성화     |
|                 | 10.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 · <u>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u><br>· 사모펀드의 공모전환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 활성화                                                       |
|                 | 11. 신용보증 지원 확대                      | · 보증공급 확대(2.4 → 4.0조원 이상)<br>· 보증한도 확대(최대 1 → 2조원)                                                                 |
|                 | 12. 민자금융 회수시장 활성화                   | ·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합리화<br>· 민자금융 회수시장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                                                                      |
| 건설·<br>운영       | 13. 공사비변동 위험 합리적 분담                 | · 수익형 민자사업 공사비상승 부담 완화<br>· 임대형 민자사업 공사비상승 부담 완화<br>· 자재비 변동 리스크 해지 방안 마련                                          |
|                 | 14. 임대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조정 주기 유연화         | · 수익률 조정 주기 유연화                                                                                                    |
|                 | 15. 재정지원 확대 및 행정절차 간소화              | ·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 유연화<br>·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연장<br>· 민투심 상정 대상 간소화(운영비 소폭 증액)<br>· 지방비 매칭 의무 폐지(환경사업)                        |
|                 | 16. 부대사업 활성화                        | · 역세권개발, 유원시설 등 부대사업 대상 확대<br>· <u>부대사업 사용·수익기간을 본사업과 동일하게 규정</u><br>· 부대사업 우대 보증 신설<br>· 부대사업 수행을 별도 법인에 위탁·대행 허용 |
| 지원              | 17. 지원기능 및 교육·정보 제공 강화              | · 기본계획 정비 및 표준안 확대 제공<br>· 교육 상시화(온라인) 및 심화 교육(오프라인) 도입<br>· 전문기관 지정 확대<br>· 인프라인포 확대 개편을 통한 종합적 정보제공              |
|                 | 18. 국제협력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민자제도를 위한 환경 조성 | ·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국제협력 활성화<br>· 민간투자사업 30주년 기념 주간행사 개최                                                                |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재구성

개정안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중 「민간투자법」 개정 필요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크게 ① 부대사업 활성화와 ②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인프라펀드) 활성화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③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에 따른 통보 의무 근거 마련의 내용도 담고 있음.

① 부대사업 활성화는 현행 「민간투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대사업 관련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기간을 본 사업과 동일하게(최대 50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②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활성화는 1)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 한도 상향, 2)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범위 확대, 3) 존속기간 설정의무 배제를 통한 ‘만기 없는’ 환매 금지형 인프라펀드 허용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현행법상 투융자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제 또는 제한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이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하 조문별로 주요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 2. 부대사업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 연장(안 제21조의2 제2항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p>○ 부대사업에 대한 지원</p> <p>-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1.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 2. 해당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3. 그 밖에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을 할 수 있음</p> <p>- &lt;신 설&gt;</p> | <p>○ 부대사업에 대한 지원</p> <p>- (현행과 같음)</p> <p>-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공유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5조에 따른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사용·수익 기간까지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p> |

개정안은 부대사업 관련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기간을 본사업과 동일하게(최대 50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 각 호1)의 사업을 말함. 부대사업을 시행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填)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

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4항<sup>2)</sup>에 따라 부대사업의 사업비가 해당 총 민간사업비의 범위 이내이면서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부대사업의 이익은 같은 조 제1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sup>3)</sup>에 따라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하여야 함.

현행법상 본사업(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의 준공 후 사업시

게 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9.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10.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
  11.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운영 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1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운영 사업
  1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 사업
  17.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설치·운영 사업
  18. 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⑭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2.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⑮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조의2(부대사업의 시행) ② 주무관청은 법 제21조제1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이익을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 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의 인하, 제37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협약에 반영해야 한다.

행자가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을 최대 50년(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까지 무상으로 사용 및 소유·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sup>4)</sup>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sup>5)</sup> 부대사업 관련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부대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에 대한 사용·수익기간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사용·수익기간은 시설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나 통상 10년 이내임.<sup>6)</sup>

-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소유·수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의 산정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되, 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해당 국유·공유 재산의 허가권자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권자 등에 대한 허가 등 신청의 대행을 말한다)  
2. 해당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3. 그 밖에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6)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의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상이함.

[ 국유·공유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

| 구 분  |      | 사용허가(대부)기간                                                                                                  |                            | 근 거                       |
|------|------|-------------------------------------------------------------------------------------------------------------|----------------------------|---------------------------|
| 국유재산 | 행정재산 | 원칙 5년 이내<br>* 기부채납시, 사용료 총액이 기부 받은 재산<br>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br>동일 기간 1회만 갱신                                      |                            | 「국유재산법」<br>제35조           |
|      | 일반재산 | 조립 목적의<br>토지·정착물                                                                                            | 원칙 20년 이내<br>동일 기간 1회만 갱신  | 「국유재산법」<br>제46조           |
|      |      | 사용자가<br>보수한 건물                                                                                              | 원칙 10년 이내<br>동일 기간 1회만 갱신  |                           |
|      |      | 영구시설물<br>축조한 경우                                                                                             | 원칙 10년 이내<br>동일 기간 1회만 갱신  |                           |
|      |      | 그 외<br>토지·정착물                                                                                               | 원칙 5년 이내<br>동일 기간 1회만 갱신   |                           |
|      |      | 기타재산                                                                                                        | 원칙 1년 이내<br>동일 기간 1회만 갱신   |                           |
|      |      | 신탁개발<br>민간참여개발                                                                                              | 원칙 30년 이내<br>20년 이내 1회만 갱신 |                           |
| 공유재산 | 행정재산 | 원칙 5년 이내<br>* 기부채납시, 사용료 총액이 기부 받은 재산<br>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최장 20년)<br>동일 기간 1회만 갱신<br>* 기부채납시, 10년 이내 1회만 갱신 가능 |                            | 「공유재산 및<br>물품관리법」<br>제21조 |
|      | 일반재산 | 토지·장착물                                                                                                      | 원칙 5년 이내<br>동일 기간 1회만 갱신   | 「공유재산 및<br>물품관리법」<br>제31조 |
|      |      | 기타재산                                                                                                        | 원칙 1년 이내<br>동일 기간 1회만 갱신   |                           |

즉,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은 현행법 제 25조에 따라 50년 이내이나, 부대사업에 필요한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사용·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부대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sup>7)</sup>

7) 2023년 실시협약을 체결한 민간투자사업 35건 중 부대사업 추진예정 사업은 1건임.

이에 부대사업 관련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수익기간을 본사업의 경우와 일치하도록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첫째, 부대사업에 필요한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최대 50년까지 연장되어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이 증가하므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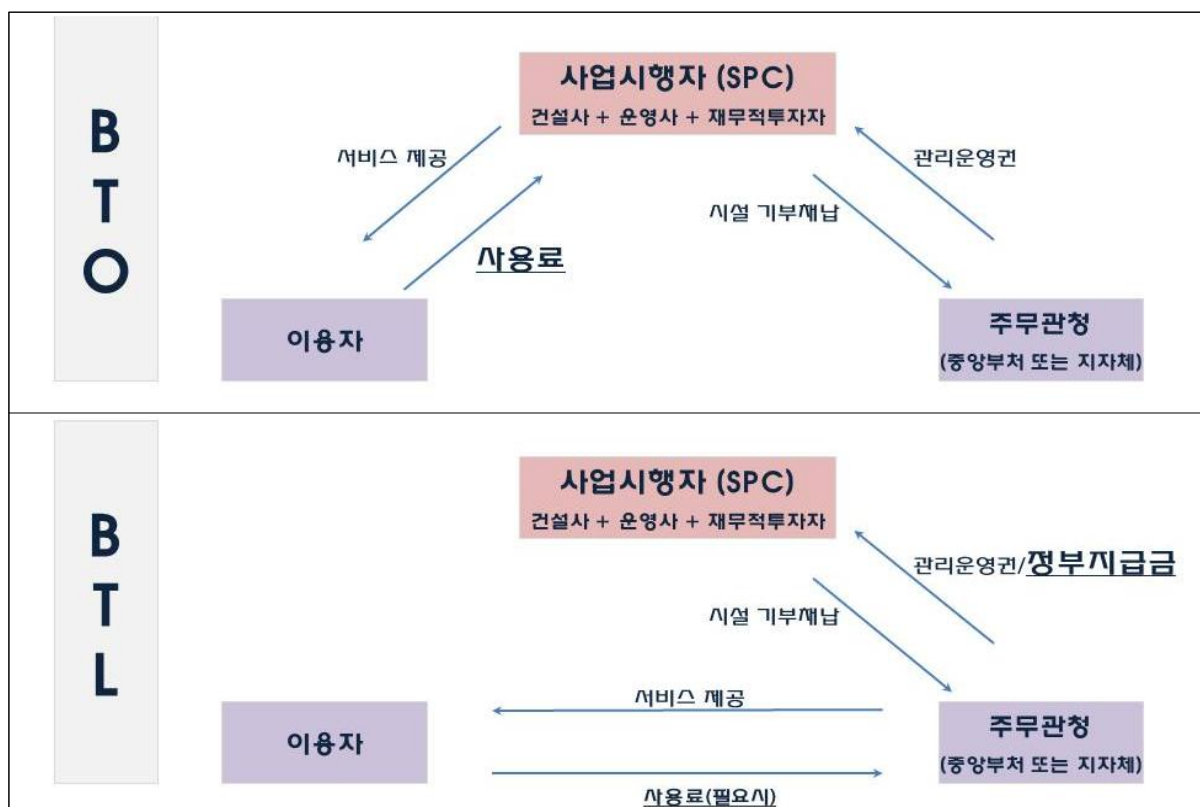
부대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현행법에 부대사업 관련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적용됨. 이에 부대시설을 기부채납하거나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한 경우 부대사업이 본 사업보다 단기간 운영될 수밖에 없어 투자비 보전 및 수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음. 부대사업을 본 사업과 동일한 기간 동안(최대 50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 관련 특례를 규정하면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률이 제고되므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이 증가하면 이용자의 사용료를 인하하

거나 정부 재정지원액을 인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대부분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또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의 형태로 추진되는데, BTO는 사회기반시설 운영과정에서 사용료 징수 등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고, BTL은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임.

[ 민간투자사업 개념도 ]



※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행법 제53조<sup>8)</sup>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부대사업은 현행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되고, 부대사업의 이익은 현행법 제21조제1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부대사업에 필요한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부대사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이용자가 지급하는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를 인하하거나,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또는 현행법 제53조에 따른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sup>9)</sup>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사업시행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현행법 제21조10)에 따라

9) 한편, 기획재정부도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을 위해 부대사업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에 맞춰 규정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부대사업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민간투자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부대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시행목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실시계획에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면 되고,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면 되며, 민간투자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에도 부대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이와 같이 부대사업은 추진 시 별도의 경쟁 입찰 등 없이 주무관청의 승인만 필요로 하므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부대사업에 필요한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할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보임.

또한, 국유·공유재산은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재산이라는 측면에서도 특정 사업자에게 국유·공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둘째, 부대사업의 이익이 실시협약에 적절히 산정 및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용료 인하 및 재정지원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현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부대사업의 이익을 사용료 인하 및 재정지원 절감 등에 사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별표 6에는 부대사업의 이익처리 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에 포함된 부대사업 또는 승인받은 부대사업은 제 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으로 본다.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 6]

부대·부속사업의 이익처리 기준(제62조의2제8항 관련) ]

| 구 분       |                  | 부속사업                                                                                                               | 부대사업                                                                                                                                                                     |
|-----------|------------------|--------------------------------------------------------------------------------------------------------------------|--------------------------------------------------------------------------------------------------------------------------------------------------------------------------|
| 활용시설 및 운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기반시설(본시설+부속시설)을 활용</li> <li>·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운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기반시설과 다른 시설을 활용</li> <li>·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운영</li> </ul>                                                                          |
| 협약상 처리    | 수익형 및 혼합형 (BTO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세전 순이익(운영수입-운영비용) 추정치를 협약에 계상</li> <li>· 사용료, 재정지원금 등으로 반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사업으로 인한 매년도 세전 순이익(수입-비용) 중 주무관청 공유비율 해당 금액을 실시협약에 반영</li> <li>· 사용료, 재정지원금 등으로 반영</li> </ul>                                 |
|           | 임대형 (BTL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세전 순이익(운영수입-운영비용) 추정치를 협약에 계상</li> <li>· 순이익은 정부지급금에서 사전 공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이익(운영수입-시설비-운영비용) 추정치 중 주무관청 공유비율 해당 금액을 현가로 환산</li> <li>· 세전 순이익 중 주무관청 공유비율 해당 금액 현가를 시설임대료 산정시 총 민간투자비에서 사전 일괄공제</li> </ul> |

부대사업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부대사업의 순이익을 추정하여야 하는데 순이익이 적절히 추정 및 산정되지 못하여 과소 산정될 경우 사용료 인하 및 재정지원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참고로, 정부는 부대사업을 활성화하여 투자비 보전 및 사용료 인하 등을 통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17일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유형을 기존의 17개에서 7개 사업을 추가하여 24개로 확대하였음.

## [ 부대사업의 유형 ]

| 기준(17개)                                                                                                                                                                                                                                                                                                                                                       | 추가(7개) <sup>1)</sup>                                                                                                                            |
|---------------------------------------------------------------------------------------------------------------------------------------------------------------------------------------------------------------------------------------------------------------------------------------------------------------------------------------------------------------|-------------------------------------------------------------------------------------------------------------------------------------------------|
| 1. 주택건설사업<br>2. 택지개발사업<br>3. 도시·군계획시설사업<br>4. 도시개발사업<br>5. 재개발사업<br>6. 산업단지개발사업<br>7.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br>8. 물류터미널사업<br>9. 항만운송사업<br>10.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br>11. 노외주차장 설치·운영 사업<br>12. 체육시설업<br>13. 문화시설 설치·운영 사업<br>14. 자연휴양림 조성사업<br>15.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운영 사업<br>16.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 사업<br>17. 건축물의 설치·운영 사업 | +                                                                                                                                               |
|                                                                                                                                                                                                                                                                                                                                                               | 1. 역세권개발사업<br>2. 테마파크업<br>3. 장사시설을 설치·조성·관리·운영하는 사업<br>4. 도심항공교통사업 및 버티포트개발사업<br>5. 여객자동차운송사업<br>6.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br>7. 동물장묘업 |

1)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서 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한,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부대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장기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159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생략)<br><u>&lt;신 설&gt;</u> |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①<br>(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br>②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공유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5조에 따른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사용·수익기간까지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 3.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식 및 범위 확대

#### 가.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 한도 상향(안 제41조의5제1항)

| 현행                                                                                                                                                                                                                                                                                                      | 개정안                                                                                                                                             |
|---------------------------------------------------------------------------------------------------------------------------------------------------------------------------------------------------------------------------------------------------------------------------------------------------------|-------------------------------------------------------------------------------------------------------------------------------------------------|
| <p>○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p> <p>-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단서 생략)</p> <p>·투융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u>100분의 30</u></p> <p>·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의 <u>100분의 30</u></p> <p>-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차입 또는 사채발행의 한도를 적용하지 않음</p> | <p>○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p> <p>- (현행과 같음)</p> <p>·투융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u>100분의 100</u></p> <p>·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의 <u>100분의 100</u></p> <p>- (현행과 같음)</p> |

개정안은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인프라펀드’라고 함)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 또는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융자회사 또는 투융자신탁임<sup>11)</sup>.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①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투융자회사와 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으로 본다.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여야 한다.  
 ④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인프라펀드는 모집방식에 따라 공모형과 사모형으로 구분되는데<sup>12)13)</sup> 사모 인프라펀드에 대하여는 차입 또는 사채 발행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공모 인프라펀드의 경우 현행법 제41조의5<sup>14)</sup>에서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도록 제한되어 있음.

한편, 「민간투자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라 452개의 인프라펀드가 운용 중인데, 대부분이 기관 중심의 소규모 사모펀드로 운용(평균 800억원 수준)되고 있어 투자 규모가 제약되고 일반 국민의 투자 기회가 제한되고 있

- 
- ⑤ 이 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융자회사, 투융자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 「자본시장법」상 펀드는 크게 사모펀드와 공모펀드로 구분되며, 이 중 “사모펀드”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私募)방식으로 발행(일반투자자의 청약권유자 수가 49인 이하인 증권발행)하고 투자자 수가 100인 이하(일반투자자 총수는 49인 이하)인 것을 의미함.
-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⑨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 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융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30
  2. 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차입 또는 사채발행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는 상황임.

[ 인프라펀드 운용 현황(2024.12.10. 기준) ]

| 구분    | 합계           | 민간투자법 근거   | 자본시장법 근거     |
|-------|--------------|------------|--------------|
| 합계    | 452개(40.7조원) | 10개(6.2조원) | 442개(34.6조원) |
| 공모펀드* | 2개(3.7조원)    | 2개(3.7조원)  | -            |
| 사모펀드  | 450개(37.0조원) | 8개(2.4조원)  | 442개(34.6조원) |

자료: 기획재정부

\* 공모 인프라펀드는 1개(맥쿼리한국인프라)였으나, KB발해인프라가 공모로 전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함(2024.11.)에 따라 2개가 됨

이에 공모 인프라펀드의 운영상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 또는 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첫째, 신속한 자금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사회기반시설사업은 특성상 사업의 공정률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사회기반시설의 안정적인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는 시기에 맞는 적절한 자금 확보가 필수적임. 이에 현행법에서는 인프라펀드가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①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제41조의5), ② 신주(新株) 발행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제41조의7<sup>15)</sup>)을 통하여도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투융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新株)를 발행하거나 투융자신탁이 그 설정 후에 추가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그러나 공모 인프라펀드의 경우 사모와 달리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므로 신주 발행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시 차입 또는 사채 발행에 비하여 자금 확보에 시간이 더 소요됨.<sup>16)</sup> 이에 긴급한 자금 필요 시 자금 확보에 유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차입 또는 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보다 상향하여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을 통하여 추가적인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신속한 자금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사모 인프라펀드 및 부동산펀드 등 유사한 다른 펀드의 차입 한도와 비교하였을 때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향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음.<sup>17)</sup>

#### [ 유사한 펀드와의 차입 한도 비교 ]

| 구 분      | 인프라펀드                                         | 부동산펀드                               | 부동산투자회사(REITS)                                  |
|----------|-----------------------------------------------|-------------------------------------|-------------------------------------------------|
| 차입<br>한도 | (공모) 자본금의 <u>30%</u><br>(사모) 순자산총액의 <u>4배</u> | 순자산총액의 <u>2배</u>                    | 자기자본의 <u>2배</u><br>(단, 주주총회 특별결의 시 <u>10배</u> ) |
| 근거<br>법률 | 민간투자법 제41조의5<br>※ 사모는 자본시장법<br>제249조의7제1항     | 자본시장법 제94조<br>제1항 및 동법 시행<br>령 제97조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반면,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 또는 사채 발행 한도를 상향하려는

16) 공모 인프라펀드 차입 절차는 약 7주, 사채 발행 절차는 약 6주, 신주 발행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절차는 약 14주가 소요됨

17) 기획재정부도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사 자산의 규제 수준,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차입 한도를 상향할 경우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기관 투자자 등 소수의 전문 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 펀드와 달리, 공모 펀드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가 투자하므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모 펀드에 비하여 규제·감독이 강화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도 사모형과 달리 공모형에 대하여만 차입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모 펀드의 차입 한도를 현행보다 상향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프라펀드의 부실 가능성이 증가하여 투자자 보호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둘째, 인프라펀드가 유사한 펀드에 비하여 차입 한도가 낮은 것은 맞지만,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 등과 달리 인프라펀드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자금을 투자하는 펀드로 그 성격이 다소 상이하다 할 수 있으므로 차입 한도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추가적으로, 후술할 개정안 제43조제1항제4호의 자산 운용 방식 확대와 연계하면 사회기반시설 외의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어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br>-----<br>-----<br>-----<br>-----<br>-----, -----<br>-----<br>-----<br>-----<br>-----. |
| 1. 투융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u>30</u>                                                                                                                                                                                 | 1. -----<br><u>100</u>                                                                                                   |
| 2. 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u>30</u>                                                                                                                                                                             | 2. -----<br>----- <u>100</u>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범위 확대(안 제43조제1항)

| 현행                                                                                                                                                                                                                                                                                                                                                                           | 개정안                                                                                                                                                                                                                                                                                                                                                                                                                                               |
|------------------------------------------------------------------------------------------------------------------------------------------------------------------------------------------------------------------------------------------------------------------------------------------------------------------------------------------------------------------------------|---------------------------------------------------------------------------------------------------------------------------------------------------------------------------------------------------------------------------------------------------------------------------------------------------------------------------------------------------------------------------------------------------------------------------------------------------|
| <p>○ 자산운용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음</li> <li>·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li> <li>·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대출채권의 취득</li> <li>·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의한 투자</li> </ul> <p>·&lt;신 설&gt;</p> <p>·(제4호 생략)</p> | <p>○ 자산운용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음</li> <li>·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li> <li>·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대출채권의 취득</li> <li>·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의한 투자</li> </ul> <p>·<u>투융자집합투자기구(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집합투자재산을 사회기반시설 외의 자산에 투자</u></p> <p>·(현행과 같음)</p> |

개정안은 공모 인프라펀드의 자산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사회기반시설 외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자산운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임(사모 인프라펀드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사회기반시설사업에만 투자 가능함).

현행법상 인프라펀드는 사회기반시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대출 및 대출채권을 취득하거나,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러한 방식

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을 통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공모 인프라펀드의 투자 대상을 사회기반시설사업 외의 자산까지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첫째, 공모 인프라펀드의 투자 수익률을 제고함으로써 공모 인프라펀드의 활성화가 기대됨.

최근 부족한 재정 및 세수 여건 하에서 원활한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인 인프라펀드의 활성화가 필요함.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민간투자법」상 인프라펀드는 총 10개에 불과하며,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 가능한 공모 인프라펀드의 경우 2개뿐인 상황임.<sup>18)</sup>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자산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공모 인프라펀드의 투자 수익률이 제고될 경우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하여 일반 국민들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동 개정사항은 사모 인프라펀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공모 인프라펀드에만 적용되므로 사모 펀드를 공모 펀드로 전환할 유인

---

18) 기존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유일했으나, 2024년 11월 KB발해인프라펀드가 공모로 전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함에 따라 2개가 되었음.

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둘째, 「자본시장법」상 인프라펀드 및 부동산펀드 등 유사한 다른 펀드의 자산운용의 범위와 비교하였을 때 「민간투자법」상 인프라펀드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법인에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사 펀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음.<sup>19)</sup>

[ 유사한 펀드와의 자산운용 범위 비교 ]

| 구 분        | 민간투자법상<br>인프라펀드         | 자본시장법상<br>인프라펀드                      | 부동산펀드                                | 부동산투자회사<br>(REITS)     |
|------------|-------------------------|--------------------------------------|--------------------------------------|------------------------|
| 자산운용<br>범위 | 사회기반시설사업<br>에만 투자(100%) | 사회기반시설사업<br>에 50% 이상 투<br>자          | 펀드재산의 50%<br>이상 부동산에 투<br>자          | 총자산의 70% 이<br>상 부동산 투자 |
| 근거<br>법률   | 민간투자법 제43조              | 자본시장법 제229<br>조제3호 및 동법<br>시행령 제240조 | 자본시장법 제229<br>조제2호 및 동법<br>시행령 제240조 | 부동산투자회사법<br>제49조의2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다만, 인프라펀드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 또는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펀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이긴 하지만 사회기반시설 사업 외의 다른 대상에 자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펀드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9) 기획재정부도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사 자산의 규제 수준,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현행 「자본시장법」 제81조<sup>20)</sup>에서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일정한 제약조건을 두고 있지만, 「민간투자법」상 인프라펀드의 경우 「민간투자법」 제44조제1항<sup>21)</sup>에 따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 및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한을 두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이하 생략)

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87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4조제5항, 제196조제5항 후단, 제2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br>1. ~ 3. (생략)<br><u>&lt;신설&gt;</u><br><br>4. (생략)<br>②·③ (생략) |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br>-----<br>-----.<br>1. ~ 3. (현행과 같음)<br>4. <u>투융자집합투자기구(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사회기반시설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u><br>5. (현행 제4호와 같음)<br>②·③ (현행과 같음) |

## 다.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허용(안 제44조제1항)

| 현행                                                                                                                                                                | 개정안                                                                                                                                                                                      |
|-------------------------------------------------------------------------------------------------------------------------------------------------------------------|------------------------------------------------------------------------------------------------------------------------------------------------------------------------------------------|
| <p>○ 다른 법률과의 관계</p> <p>-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87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 제194조제5항, 제196조제5항 후단, <u>제230조제2항부터</u>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함</p> | <p>○ 다른 법률과의 관계</p> <p>-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87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 제194조제5항, 제196조제5항 후단, <u>제230조제1항*부터</u>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함</p> <p>※ 존속기한 설정의무 규정</p> |

개정안은 존속기간 설정의무 배제를 통한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를 허용함으로써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지분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본시장법」 제235조<sup>22)</sup>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투자자는 언제든지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등은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230조제1항<sup>23)</sup>에서는 제235조에도 불구하고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①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회사등은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설립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이 절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은 제235조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설립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이하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라 함)를 설정·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투자자가 투자지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존속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는 일반적으로 투자자산을 단기간에 현금화하여 지급하기 어려워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임. 또한, 가입 시 정한 계약기간 만기 전까지 환매(출금)를 할 수 없으므로,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환매금지형 펀드를 증권시장에 상장하도록 의무화하여<sup>24)</sup><sup>25)</sup> 중도에 자금이 필요한 투자자는 증권 매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민간투자법」상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인프라펀드)는 「자본시장법」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sup>26)</sup>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25) 다만, 「민간투자법」 제44조에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230조제3항은 적용이 제외되므로 “90일”의 상장 기한은 적용되지는 않지만, 「민간투자법」 제41조의8에서 상장요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8(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①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에는 그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은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2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하여야 한다.

④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한편, 현행법상 인프라펀드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4조제1항<sup>27)</sup>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230조제2항부터 제4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존속기간 설정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230조제1항은 적용되므로 존속기간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인프라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

| 구분             | 내용                                                                                                                            | 현행  | 개정안 |
|----------------|-------------------------------------------------------------------------------------------------------------------------------|-----|-----|
| 자본시장법<br>제230조 | 제1항<br>제235조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br>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의 환<br>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환매금지<br>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수 있음                  | 적용○ | 적용× |
|                | 제2항<br>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등<br>의 경우에만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br>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음                                                | 적용× | 적용× |
|                | 제3항<br>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br>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br>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br>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br>시장에 상장하여야 함 | 적용× | 적용× |
|                | 제4항<br>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집합투자증권의 기준<br>가격 산정 관련)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br>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br>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적용함                    | 적용× | 적용× |
|                | 제5항<br>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하기<br>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br>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br>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여야 함                      | 적용○ | 적용○ |

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2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87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4조제5항, 제196조제5항 후단, 제2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간투자법」 상 인프라펀드 운용 현황(2024.8.31. 기준) ]

| 펀드명                 | 설립일*       | 순자산<br>(억원) | 차입비<br>율(%) | 투자<br>자산수 | 비고<br>(특이사항)                          |
|---------------------|------------|-------------|-------------|-----------|---------------------------------------|
| <b>공모 인프라펀드(2개)</b> |            |             |             |           |                                       |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        | '02.12.12. | 28,370      | 28.6%       | 20        | '06.3.15 상장                           |
| KB발해인프라투자회사         | '06.1.24   | 7,909       | 24.01%      | 5         | 사모펀드였으나<br>공모로 전환됨<br>( '24.11.29 상장) |
| <b>사모 인프라펀드(8개)</b> |            |             |             |           |                                       |
| 한국인프라이호투자회사         | '05.5.17.  | 7,694       | 28.32%      | 6         |                                       |
| 한국BTL인프라투자회사        | '06.5.19.  | 7,402       | 0%          | 52        |                                       |
|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자<br>회사  | '06.8.1.   | 3,460       | 0%          | 6         |                                       |
| 신한인프라포트폴리오투자<br>회사  | '06.9.14.  | 1,239       | 0%          | 33        |                                       |
| 한국비티엘일호투자회사         | '06.9.19.  | 2,390       | 0%          | 32        |                                       |
| 한국철도일호투자회사          | '06.12.8.  | 1,329       | 0%          | 2         |                                       |
| 한국교육투자회사            | '06.12.8.  | 618         | 0%          | 11        |                                       |
| 엠디엠인프라투자회사          | '24.7.12.  | 14          | 0%          | -         |                                       |

자료: 기획재정부

\* 펀드 운용기간의 경우 사모의 경우 펀드별로 20년~32년으로 상이함.

단, 공모의 경우 펀드 만료(해산)일을 특정하지 않고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등'이 있는 경우에 해산한다고 규정하는 등 사실상 만기를 설정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제230조제1항도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시  
킴으로써 존속기간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를 설  
정·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존속기간 설정의무 면제를 통해 공모 인프라펀드의 장기적인 운용  
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존속기간 설정의무를 배제함으로써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 처분이 필요하지 않아 자산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펀드 내 회수된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를 운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sup>28)29)</sup>

추가로, 사모 인프라펀드의 경우 이미 「자본시장법」에 따라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sup>30)31)</sup>,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다만, 환매금지형펀드는 만기시까지 환매가 불가능하므로 중도에 자금이 필요한 투자자는 증권 매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투자자가 증권시장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고자 하더라도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가 적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sup>32)</sup>

28) 존속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경우, 상장리츠(간접투자기구인 위탁관리리츠) 20개 중 14개는 존속기간이 없고, 만기가 있는 경우에도 최하 40년(최장 90년) 등 장기로 설정함.

29) 기획재정부도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사 자산의 규제 수준,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및 제249조의20

31)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사모 인프라펀드 중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는 없음.

추가적으로, 현행 「민간투자법」 제41조제3항에서는 투융자집합투자 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행                                                                                                                                                                                                                       | 개정안                                                                                                                                                                                                                      |
|--------------------------------------------------------------------------------------------------------------------------------------------------------------------------------------------------------------------------|--------------------------------------------------------------------------------------------------------------------------------------------------------------------------------------------------------------------------|
| 제41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b>제230조제1항</b> 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여야 한다.                                                                                                                      | ○ (현행과 같음)                                                                                                                                                                                                               |
|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87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4조제5항, 제196조제5항 후단, <b>제230조제2항</b> 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을 <b>적용하지 아니한다.</b> |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87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4조제5항, 제196조제5항 후단, <b>제230조제1항</b> 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을 <b>적용하지 아니한다.</b> |

따라서 존속기간 설정의무를 배제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민간투자법」 제44조에서 ‘「자본시장법」 제23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개정할 경우, 제41조제3항의 규정과 배치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이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임.

참고로, 한국금융투자협회<sup>33)</sup>의 경우,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회계

32)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펀드 해지에 동의하여 청산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다수의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 펀드의 특성상 수익자총회 개최 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임.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설립) ①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한다.

기준(IFRS9<sup>34)</sup>)이 적용되면서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인프라펀드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프라펀드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있는데, 만기상환의무가 없는 펀드는 회계상 지분증권으로 분류하여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어 손익의 변동성 위험이 줄어드므로,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인프라펀드 신규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동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sup>35)</sup>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투융자<br>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자본시<br>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br>조, 제83조, 제86조, 제87조, 제183조,<br>제186조제2항(「자본시장과 금융투<br>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를 준용하<br>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4조제5항,<br>제196조제5항 후단, 제230조제2항부<br>터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을 적<br>용하지 아니한다. |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br>-----<br>-----<br>-----<br>-----<br>----- 제230조제1<br>항-----<br>-----.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34)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발행하는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35) 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 “기재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기대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허용 등 금융 대책 다수 반영-”(2024.10.2.)

#### 4.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에 따른 통보 의무 근거 마련(안 제41조의6제1항)

| 현 행                                                                                                                                                                                                                                               | 개 정 안                                                                                                                                                                                                                                                                                                         |
|---------------------------------------------------------------------------------------------------------------------------------------------------------------------------------------------------------------------------------------------------|---------------------------------------------------------------------------------------------------------------------------------------------------------------------------------------------------------------------------------------------------------------------------------------------------------------|
| <p>○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p> <p>-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u>제출받은 경우 제출일부터</u> 5영업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u>등록신청서</u>와 집합투자규약 등의 모든 첨부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2조제4항에 따른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p> | <p>○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p> <p>-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u>제출받거나 같은 법 제249조의6제2항,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제출일 또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u> 5영업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u>등록신청서 또는 보고서</u>와 집합투자규약 등의 모든 첨부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2조제4항에 따른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p> |

개정안은 설정·설립 이후 ‘등록’이 아닌 ‘보고’를 하는 사모 인프라펀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고서류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사모 인프라펀드에 대한 통보 의무를 보완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사회기반시설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인프라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으로 보고 있으며,<sup>36)</sup> 「자본시장법」 제

3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①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투융자회사와 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으로 본다.

④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182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시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함.<sup>37)</sup> 또한, 현행 「민간투자법」 제41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등록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sup>38)39)</sup>

그러나 기존에 「자본시장법」에서 공·사모를 불문하고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던 것과 달리, ‘사모펀드’의 경우 신속하게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대상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5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설립규제가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되었음.<sup>40)</sup>

그럼에도 현행 「민간투자법」에서는 ‘등록’한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와 집합투자계약 등의 모든 첨부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2조제4항에 따른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9) 종전에는 사회기반시설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 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전 협의절차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지연되어 적기에 펀드를 등록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2016년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자료제출 및 사후 통보로 변경하였음.

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6(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및 보고)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경우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④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대해 기획재정부에 설정·설립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 등록이 아닌 ‘보고’를 통해 투융자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설정·설립에 관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이 아닌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 설정·설립을 통보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동 개정안은 필요성이 있음.<sup>41)</sup>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
|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와 집합투자계약 등의 모든 첨부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2조제4항에 따른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받거나  |
|                                                                                                                                                                                                                               |   |                                  | 같은 법 제249조의6제2항, 제249조의 |        |
|                                                                                                                                                                                                                               |   |                                  | 10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제   |        |
|                                                                                                                                                                                                                               |   |                                  | 출일 또는 보고를 받은 날          | --- 등록 |
|                                                                                                                                                                                                                               |   |                                  | 신청서 또는 보고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략)                                                                                                                                                                                                                        |   | ② (현행과 같음)                       |                         |        |

41) 기획재정부도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설정·설립 시 ‘등록’이 아닌 ‘보고’로 변경되어 보고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통보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153 |

